

일반관리시설

2-9. 유원시설

(놀이공원, 워터파크 등 종합·일반·기타 유원시설)

【의무사항】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▲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소독 등)	▲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	▲ 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	▲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 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	▲ 집합금지

【권고사항】

공통사항

<이용자>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(단,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)
-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
 -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, 대화 자제,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

<책임자·종사자>

-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
-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
-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
 -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 -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,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
 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 - 실내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하기
 - 흡연실 내에서는 사람 간 거리 유지,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하기
- ※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(과태료 부과) 시설·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(ncov.mohw.go.kr)에서 확인하기

1] 이용자

- 유원시설(놀이공원, 워터파크,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키즈카페 등) 출입 시 증상 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확인 등 방역 협조하기
 - 실내 휴게실, 카페,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
 - 시설 내(물 속 포함)에서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음식 섭취 및 대화 자제하기
 - 가림막(칸막이)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,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
 - 탈의실(락커룸), 대기실(휴게실)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
 -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에 위치한 벤치, 정자, 그늘막(카바나), 일광용 의자(선베드) 등의 휴게시설을 이용하기
 - 수건, 수영복, 수경, 스노클 등 휴대용 용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, 공중화장실, 목욕탕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2] 책임자·종사자

- 유원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하기
- 관람객과 신체접촉을 피하고 거리 2m(최소 1m)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지침 마련하기
- 개인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·안내하기

- 손 씻기, 기침 예절, 거리 두기,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개인 위생수칙 안내(홍보물 게시, 현수막, 문자전광판, 안내방송 등)하기
- 안전요원에게 기본수칙 준수 감시(마스크 착용, 사회적 거리 유지 등)에 대한 업무를 중복 배정하지 않고, 다른 직원에게 업무 배정하기
- 직원들이 휴게실, 탈의실 등 공용구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최소시간 머물도록 하고, 시간 차를 두고 분산하여 이용하도록 하기
-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입장 인원을 관리하기
 - * 예) 시간대별 입장 인원 제한, 시간대별 예약제도 운영, 시설 면적(허가·신고면적) 4㎡ 이상 당 1명으로 입장 인원 제한 등
- 줄서는 장소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2m(최소 1m) 이상 간격으로 위치 표시하여 안내하기
- 놀이기구 탑승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안내하기
- 식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(한 방향 보기, 띄워 앉기 등) 유도하기
- 대규모 행사, 공동 활동 등 최소화하기
-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
- 공용물품(그늘막(카바나), 일광용 의자(선베드) 등)은 사용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전에 소독하기
- 수영복, 수건, 물놀이용품(개인별 휴대가능용품)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, 공용물품 제공 시에는 소독 철저히 하기
- 탈의실(락커룸), 대기실(휴게실) 등 부대시설은 상시 또는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손이 자주 닿는 표면, 놀이기구(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표면) 등은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하기
- 탈의실(락커룸), 샤워실, 대기실(휴게실) 등 공용시설은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 인원을 줄이고, 마스크 착용 및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
 - * 예) 탈의실(락커룸) 내 개인 사물함 배정 시 일정 간격을 띄워 배정, 실내 대기실(휴게실)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배치하기 등
- 물놀이 시설 내(물 속 포함)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음식 섭취 및 대화 자제 안내하기
- 실외 휴게시설의 탁자, 일광용 의자(선베드) 등은 2m(최소 1m) 이상 간격으로 배치하기
- 실내 시설보다 벤치, 정자, 그늘막(카바나), 일광용 의자(선베드) 등의 실외 휴게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기

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, 공중화장실, 목욕탕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